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20년도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년도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안 제101조 제4항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및 방송사업자 등이 개설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영세 기업, 항공사 등 개설·운용)에 대해 '20년도 한해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위기관리대책회의(4.1일)」 안전에 관련 정책방향 반영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

가. 고등교육법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 중 감면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②·③ (생략) <u><신설></u>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u> <u>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 <u>4.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u>

가. 고등교육법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 락 처	(044) 202-4953